

의안번호	2212078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5.8.18.
추계번호	25E434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24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09억원(연평균 24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903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1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(안 제105조의4)	-242	-242	-242	-242	-242	-1,209	-242
- 국세(74.7%)	-181	-181	-181	-181	-181	-903	-181
- 지방소비세(25.3%)	-61	-61	-61	-61	-61	-306	-6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5조의4(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	○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○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환급세액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2조의2에 따른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전액을 납입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에 지급 [참고사항] 개정안은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·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의 의결을 전제로 함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5조의4(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
-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 비용은 통계청 「운수업조사보고서」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업 및 시외버스 운송업의 기타 재료비로 전제
 - 개정안은 환급대상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기자재의 범위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타 재료비 전체로 전제
- 추계기간 동안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 비용은 최근 5년간(2019~2023년)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
- 부가가치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분까지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추계방법

- 통계청 「운수업조사보고서」에 따른 최근 5년간(2019~2023년)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 비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최근 5년간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 비용: 2019~2023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평균
사내버스	156,525	187,321	177,071	190,528	222,338	186,757
시외버스	85,471	73,420	71,421	92,375	73,043	79,146
합계	241,996	260,741	248,492	282,903	295,381	265,903

자료: 통계청, 연도별 운수업조사보고서

- 추계기간 동안 기자재 비용이 최근 5년간 평균 수준(약 2,659억원)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, 기자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‘기자재 비용(공급대가) × 1/11’로서 약 242억원임

나. 추계결과

-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경우, 세수효과는 2024년 24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09억원(연평균 24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903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1억원 감소 예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(안 제105조의4)	-242	-242	-242	-242	-242	-1,209	-242
- 국세(74.7%)	-181	-181	-181	-181	-181	-903	-181
- 지방소비세(25.3%)	-61	-61	-61	-61	-61	-306	-61

IV. 부대의견

- 동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현재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기자재 비용을 「운수업조사보고서」에 따른 기타 재료비 전체로 보았으므로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